

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의자 : 박은경, 이정애, 원병일,
김진희

1. 제안 이유

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교섭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교섭단체"란 남양주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남양주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(이하 "대표의원"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

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당 정책과의 교류·협력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의 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

대표의원 인영부

성명		직인	사인
한글			
한문			

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번	소속정당	의원성명	서명	인

년 월 일

○ ○ ○ 대표의원 (직인)

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변경 보고

「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“구분”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” 등을 기재

대표의원 인영부

성 명		직 인	사 인
한 글			
한 문			

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인

※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“서명”란은 불요

년 월 일

○ ○ ○ 대표의원 (직인)

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보고

「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이동보고

대 상 의 원		이 동 사 항			비 고
소속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
※ 이동사항중 “내용”란에는 “교섭단체 탈퇴”, “신규가입” 등을 기재

정당변경 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○ ○ ○ 대표의원 (직인)

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보고

「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취득(소속정당 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당적 취득보고

의원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취득한 정당명	취 득 일 자	

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남양주시의회 의원 ○ ○ ○ (인)

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 : 「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나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예산의 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지원규모와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수반요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학철